

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용 인 시 의 회 의 장

2022년 1월 27일

용인시의회 훈령 제6호

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
증의 규격·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무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등)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
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공무원증의 규격 : 가로 54밀리미터, 세로 85.6밀리미터
2. 공무원증 앞면에 기재할 사항 : 나라문장, 사진, 성명 및 소속기관
3. 공무원증 뒷면에 기재할 사항 : 발급번호, 소속기관, 직위/직급, 성명, 발급일,
발급기관장의 명義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. 다만, 직위/직급의
경우 공무원의 직위/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
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.

② 공무원증의 집적회로(IC)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(IC)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,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무원증의 발급권자) 공무원증은 용인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다.

제4조(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) ①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,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안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.(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)

③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달게 할 수 있다.

1. 전시, 사변,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건·사고 발생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한 경우
3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5조(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) ① 공무원증에 붙인 사진은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직급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의장은 공무원의 전입이 있을 때에는 전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 받은 뒤 새로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무원증의 반납 등) ①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,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때에는 공무원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1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

2.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의정담당관
입 안 자	과장 직위 · 성명	의정담당관 고광섭
	팀장 직위 · 성명	인사운영팀장 김진구
	주무관 성명 · 전화	김준석 (324-3968)

공무원증

[]발급

[√]재발급

신청서

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	처리기간
신 청 인 인적사항	소속	직위(직급)	
	성명(한글)	생년월일	
	공무원증 번호	전화번호	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. [√] 동의 [] 동의 안 함

신청사유	[] 분실 [] 훼손 [] 기타 ()
분실사유	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
붙임	사진 2매(반명함판 3×4cm) 조직도사진 활용의 경우 제출 필요없음

「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」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원증 ([]발급, [√]재발급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성명(서명 또는 인)

위 사실을 확인합니다.

부서장성명(서명 또는 인)

용인시의회 공무원증 규정

□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·제식·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공무원증의 규격·제식 및 기재사항 규정(안 제2조)
-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규정(안 제4조)
-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, 반납 등 규정(안 제5조 ~ 안 제6조)